

향남공장 반제품 보관 자동창고 2차 계약변경 합의서

발주자 한국오츠카제약(주)과 시공사 (주)에스에프에이가 2022. 6. 15일 체결한 '한국오츠카제약 향남공장 반제품 보관 자동창고 구축공사' 계약 (이하 '원 계약'이라 함) 및 2023. 11. 23일에 체결한 1차 계약변경 합의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2차 계약변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변경 사유: 건축공사 지연 등에 따른 자동창고 공사일정 변경
2. 변경내역

구분	원 계약	1차 계약변경	2차 계약변경	비고
기간	2023.11.30까지 (단, 공사완료 및 최종검수 완료일까지로 함)	2024.2.28까지 (단, 공사완료 및 최종검수 완료일까지로 함)	2024.4.30까지 (단, 공사완료 및 최종검수 완료일까지로 함)	2개월 연장

3. 본 합의서는 "발주자"와 "시공사" 쌍방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4. 본 합의서로 변경하지 아니한 조항은 2022. 6. 15일에 체결한 원 계약의 모든 조항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5. 본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고 "발주서" 와 "시공사"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2월 26일

발주자 상호 : 한국오츠카제약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3길 27

대표이사 : 문 성 호 (인)

시공사 상호 :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순환길 29길 25

대표이사 : 김 영 민 (인)




안 전 작 업 약 정 서

PSM 협력업체안전관리
PSMF-440-02
20210115

본 약정서는 한국오츠카제약 주식회사 내에서 도급 및 외주업체가 작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과 회사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공사 및 작업시작에 앞서 약정한다.

- 다 음 -

1. 한국오츠카제약(주)를 "갑"이라 하고 []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를 "을"이라 칭한다.
2.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방법 등 해당되는 모든 법규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안전,보건,환경관련 "갑"의 지도, 조언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갑"은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에 따른 유해위험요소의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의 대표는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작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을"의 근로자가 "갑"의 사내에서 작업 중 부주의 혹은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미 설치, 안전수칙 미 준수 등의 상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갑"의 재산 및 인원의 피해가 없도록 작업장구획, 현장 통제, 작업내용과 일정 협의, 안내표지 설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을"은 작업별 작업관리자를 입회토록 하여 작업장의 안전사항을 감독, 관리 하여야 한다.
7. "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8. "을"은 업무에 임하여 현장 주변에 피해요소가 없도록 하며, 공사와 관련한 주변 민원의 책임이 있다.
9. 공사의 기간이 5(1주)일 이상이거나 장비가를 제외한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을"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공에 임한다.
10. "을"이 제출하는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성 평가서, 작업계획서 등의 서류는 "갑"의 검토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으로 발생하는 일정지연과 손해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11. "을"은 공사와 관련한 전력 및 용수 등의 사용은 "갑"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위치는 "갑"이 정하여준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12. "을"이 상기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 중지 및 배상 및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13. "을"은 사내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안전교육, 안전준수서약, 보호구지급, 안전관리비 정산 등 안전에 관련된 문서를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 시 사본을 제출하여야한다.
14. 상기 사항 약정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13항은 해당문서의 법정 보유기간으로 한다.

공사명	한국오츠카제약 창고 구축 공사	향남공장 반제품보관자동	공사기간	2022. 06. 15 ~ 2024. 04. 30
상기 사항을 이행에 있어 이의 없이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공사계약과 동시 서면 약속한다. 서약일 : 2024 년 02월 28일				
갑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3길27 한국오츠카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문 성 호		을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순환길 29길 25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대 표 이 사 : 김 영 민

